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53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이종배·김승수·김소희

김위상 • 박충권 • 박정하

송언석 · 임이자 · 인요한

김예지 • 신성범 • 최은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 대신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됨.

그런데 최근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잔혹화 등이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14세"를 "12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
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辺) ①
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	
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2
를 한 10세 이상 <u>14세</u> 미만인	<u>12세</u>
소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